

# 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각종 학술연구 단체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본교 내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교의 교육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산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초 과학 기술 연구
- ② 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
- ③ 산업체 기술 지원(조사, 계획, 설계, 감리, 평가, 진단, 지도, 교육, 자문)
- ④ 대외 기관에서 공모 혹은 위탁하는 과제 연구
- ⑤ 산업기술 및 학문연구에 관한 학술행사 개최
- ⑥ 최신 학문 및 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
- ⑦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⑧ 연구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 업적 기록과 관리
- ⑨ 대학내 산학협력사업 참여 지원
- ⑩ 대학내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 ⑪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홍보, 연구비 확보, 회계관리 및 일반 관리 등)

## 제2장 조 직

### 제5조 (편성)

- ① 연구소에 운영부 및 정보화지원 연구부, 환경신소재 연구부, PCB특성화 연구부, 디자인 연구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분야(학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 ②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화지원 연구부는 전자전산분야, 산업시스템경영, 사무자동화 분야의 연구
  - 2. 환경·신소재 연구부는 환경·신소재, 응용화학, 섬유 분야의 연구
  - 3. PCB 특성화 연구부는 PCB 분야와 관련된 제반 연구
  - 4. 디자인 연구부는 공예디자인, 상업디자인, 광고디자인,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
- ③ 연구소 기구 편성표는 별첨 1과 같다.

#### 제6조 (소장)

- ① 연구소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 (운영부장)

- ① 운영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2.07.16.>
- ② 운영부장은 연구소 운영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8조 (연구부장)

- ① 각 연구부장은 부내 연구원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연구부장은 부내 연구실간의 연구업무를 조정, 관장한다.

#### 제9조 (연구원)

-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2.07.16.>
- ② 연구의 성질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거 특별 연구원을 총장이 위촉 할 수 있다.

#### 제10조 (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 부장 및 운영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겸임교원, 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7.16.>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간사는 운영부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운영방침
  -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3.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연구소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원고 접수(수집), 심사, 편집, 출판 및 발간
  -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 산하에 심의사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장 예 산

### 제12조 (교비지원)

교비에서 연구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수입)

연구소의 수입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연구비, 산업체로부터의 용역연구 개발비 및 기타 기술지원료, 간접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 (지출)

본 연구소의 지출은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년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